

#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6 /
------------	------

제출일자 : 2013. 11.

제 출 자 : 달성군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2014년 달성군 개청 100주년을 앞두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100년 달성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100년 달성 홍보에 공로가 있는 군민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100년 달성 기념사업 공로자 포상조항 신설(안 제13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10. 21. ~ 11. 1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포상) ①군수는 기념사업 추진에 공로가 큰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의 종류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13조(포상)</u></p> <p>① <u>군수는 기념사업 추진에 공로가 큰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u></p> <p>② <u>포상의 종류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u>제13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제1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u>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2012.3.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5.3.11, 개정2012.3.30)

②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30)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사항 등의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하며, 포상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조 신설 2012.3.30)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써 정한다.